

금조성으로 인한 단가인상과 그로 인한 비합리적인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 부처간 합의는 물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엘베스트 COO팀 박현 부장은 “작년 한해 야립광고가 중단되면서 옥외광고시장이 축소, 침체되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옥외광고에 새로운 관심이 유발되고 시장이 살아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전했다. 다만 규제정책보다는 버스외부광고나 지하

철광고에서 보여지듯이 시장의 자가정화기능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광고의 경우 최근 2호선의 무분별한 광고물량을 대폭 줄이고 디자인과 사항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정화노력을 하고 있다.

실버볼렛 매체팀 윤종의 부장도 “형태가 바뀌더라도 옥외광고시장에서 야립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옥외광고업계에서는 광고마진 틀이 과거보다 못할 것이란 얘기가 많으며 광고단가 상승 우려와 함께, 야립광고나 버스외부광고 등 정형화된 옥외매체는 과거에 비해 구체적인 규제조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취재 | 이수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屋外廣告物等管理法</p> <p>第1條(목적) 이 법은 屋外廣告物의 表示場所· 표시방법과 揭示施設의 設置·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3條(廣告物 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1. -6.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신설></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p> <p>第1條(목적) —————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p> <p>第3條(廣告物 등의 許可 또는 申告)① —————</p> <p>—————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p> <p>1.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방시설 또는 표방수단에 제한· 표시· 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2 이상의 사· 도를 걸쳐 운영되는 경우</p> <p>예는 해당 표방수단 분사 소재지의 사·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2. 2 이상의 사· 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第5條(禁止廣告物등) ① (생략)</p> <p>②(구분되지 廣告物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4. (생략)</p> <p><신설></p> <p>5. 기타 法규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p> <p><신설></p>
<p>第5條(禁止廣告物등) ① (생략)</p> <p>②(구분되지 廣告物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4. (생략)</p> <p><신설></p> <p>5. 기타 法규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p> <p><신설></p>	<p>第5條(禁止廣告物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4. (현행과 같음)</p> <p>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p> <p>6. (중전 제5호와 같음)</p> <p>제5조의2(국가와 사· 도의 지원 및 사· 군 자치구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廣告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p>

현행	개정안
<p>————— 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사·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사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p> <p>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p> <p>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행정적 자유권 침해 구속에 관한 사항</p> <p>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p> <p>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p> <p>6. 필요한 예산의 확보· 집행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p> <p>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사·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의 종합계획에 따라 사· 군· 자치구의 廣告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 도 廣告물관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사·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 경우 사· 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폐지하고 목적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廣告물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며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무디하는 등</p>	<p>————— 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사·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사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p> <p>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p> <p>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행정적 자유권 침해 구속에 관한 사항</p> <p>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p> <p>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p> <p>6. 필요한 예산의 확보· 집행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p> <p>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사·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사· 군· 자치구의 廣告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사· 도 廣告물관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사·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 경우 사· 도지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폐지하고 목적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廣告물등 정비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며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무디하는 등</p>

현행	개정안
<p>————— 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廣告물 제 한) ①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廣告물등의 설치· 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규제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廣告물등을 설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는 다른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廣告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p> <p>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廣告물등을 제외하고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廣告물등을 설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설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廣告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국가등은 제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廣告물등의 설치· 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廣告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廣告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제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조제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이를 수행한다.</p> <p>⑤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제4항에 따른 廣告물 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에 관한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廣告물 등의 심미성· 광고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廣告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이윤담고 폐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제3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사· 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p> <p>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p> <p>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p> <p>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p> <p>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권익금</p> <p>6. 국가 또는 사· 도로부터의 보조금</p> <p>③기금은 廣告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사· 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p> <p>④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廣告물관리심의위원회) ① —————</p> <p>—————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사· 군· 자치구에 각각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 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廣告물 제 한) ①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廣告물등의 설치· 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규제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廣告물등을 설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는 다른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廣告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p> <p>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廣告물등을 제외하고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廣告물등을 설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설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廣告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국가등은 제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廣告물등의 설치· 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廣告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廣告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공 또는 공무원등에 속하는 일반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p> <p>⑤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제4항에 따른 廣告물 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에 관한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廣告물 등의 심미성· 광고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廣告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이윤담고 폐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제3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사· 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p> <p>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p> <p>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p> <p>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p> <p>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권익금</p> <p>6. 국가 또는 사· 도로부터의 보조금</p> <p>③기금은 廣告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사· 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p> <p>④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廣告물관리심의위원회) ① —————</p> <p>————— 특별시· 광</p>
<p>————— 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廣告물 제 한) ①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廣告물등의 설치· 표시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규제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廣告물등을 설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는 다른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廣告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p> <p>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廣告물등을 제외하고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廣告물등을 설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설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廣告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국가등은 제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廣告물등의 설치· 표시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廣告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廣告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원 마련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공 또는 공무원등에 속하는 일반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p> <p>⑤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제4항에 따른 廣告물 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에 관한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廣告물 등의 심미성· 광고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廣告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이윤담고 폐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제3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사· 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p> <p>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p> <p>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p> <p>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p> <p>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권익금</p> <p>6. 국가 또는 사· 도로부터의 보조금</p> <p>③기금은 廣告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사· 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p> <p>④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廣告물관리심의위원회) ① —————</p> <p>————— 특별시· 광</p>	<p>② ③ (생략)</p> <p><신설></p> <p>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廣告物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p>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p> <p>4. 廣告物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p> <p>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廣告物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p> <p>6.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 등이 행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심의</p> <p>7. 그 밖에 廣告物등의 제도의 관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공 또는 공무원등에 속하는 일반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p> <p>2. 廣告物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p> <p>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민간단체의 대표</p> <p>③위원회의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비용부담)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 하는 廣告物등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4 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p> <p>1. 관공상체 등을 위하여 설치· 표시하는 廣告物등</p> <p>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 표시하는 廣告物등</p> <p>3. 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설치· 표시하는 廣告物등</p> <p>4. 단체 또는 개인의 특별한 정취활동 또는 논문출판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廣告物등</p> <p>第10條(위반에 대한 措置) ① 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0조(위반에 대한 措置)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제3조를 위반한 廣告物 중 정회번호 의 외 연락처가 없는 廣告物 등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 장은 위반행위 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 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p>